2016년도 제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6년 1월 28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이 흥 모 부총재보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조 정 환 금융안정국장

허 진 호 통화정책국장 신 호 순 금융시장국장

홍 승 제 국제국장 이 환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서 봉 국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3호 - 공개시장조작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공개시장조작'용어를 '공개시장운영'으로 변경하고 공개 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명문화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1월 20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관련규정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기준과 국고채 전문딜러 선정기준을 일치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공개시장운영의 경우 입찰대상기관과 거래유형이 국고 채 전문딜러에 비해 다양하기 때문에 두 기준을 일치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절차가 생략된 점을 감안할 때 대상기관 선정결과와 함께 연중 공개시장운영 결과를 금 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또 다 른 일부 위원은 동 선정결과를 월중 공개시장운영 결과 보고에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금번 개정된 「공개시장운영규정」 제53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대상기관 선정결과를 7월중 공개시장운영 결과 보고시 포함하는 한편. 연중 운영결과는 내년초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조작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공개시장조작규정」개정(안)(생략)